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아동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 백선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407호)

2026. 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아동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협의체 구성 등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백선희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6. 4. 17.

다. 회 부 일 : 2026. 4.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스마트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플랫폼 등의 확산으로 아동의 디지털 이용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 특히 디지털 기기 및 서비스의 과도한 이용으로 인해 학습 저하, 수면 부족, 정서 불안 등 일상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받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계획에서도 아동 디지털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이에 대한 체계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대응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민간기업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아동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민간기업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의 업무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아동의 조기발견 및 예방과 협의체의 업무 지원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및 제52조제2항).

Ⅲ. 검토의견

1. 아동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협의체 구성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아동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민간기업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51조의2 신설),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의 업무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아동의 조기발견·예방 및 제51조의2에 따른 협의체의 업무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2항제3호·제4호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1조의2(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협의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민간기업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개정안
제52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 센터) ① (생략) ② 대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2. (생략) <u><신설></u> <u><신설></u> 3. (생략)	제52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 센터)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u>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아동의 조기발견 및 예방</u> 4. <u>제51조의2에 따른 협의체의 업무 지원</u> 5. (현행 제3호와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에 따르면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¹⁾).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제51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또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센터(이하 “대응센터”)를 설치·운영²⁾할 수 있음.
- 대응센터는 스마트쉼센터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업무로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에 대한 상담 및 치유,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교육·홍보 등이 있음.
-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및 각종 디지털 플랫폼 등 지능정보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디지털 기기의 이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지능정보서비스 이용 시간과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과의존 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특히 아동·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자기통제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시기에 있어 디지털 콘텐츠 및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며,

과의존 상태가 지속될 경우 학습능력 저하, 수면 부족, 대인관계 위축, 정서 발달 저해 등 성장 과정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정책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음.

2) 「지능정보화 기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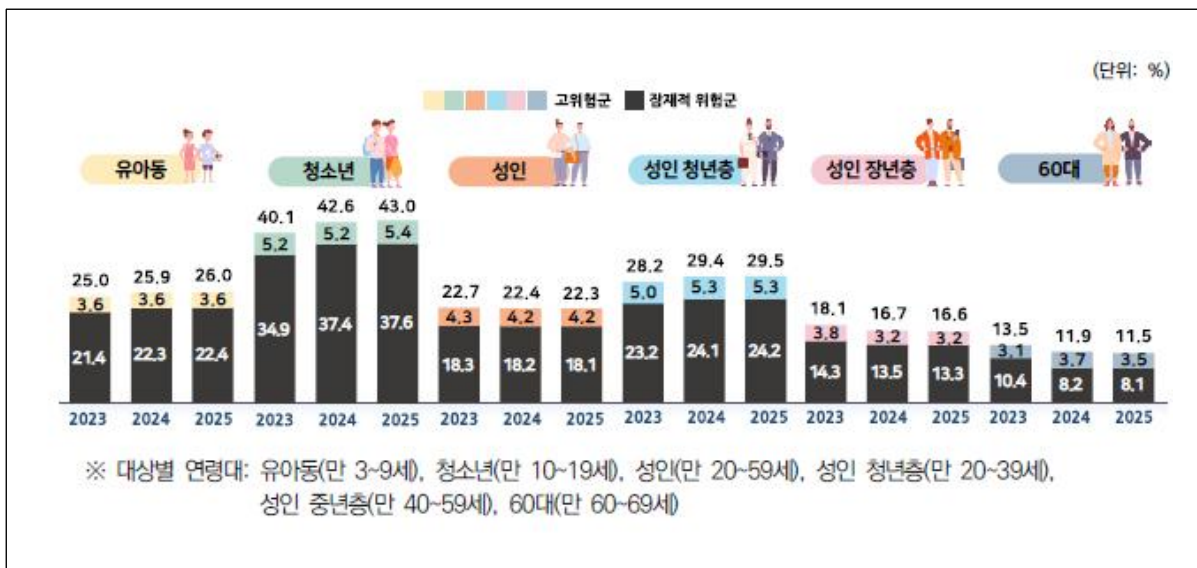
제52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센터(이하 “대응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대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에 대한 상담 및 치유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교육·홍보
3.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실시한 「2025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집단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청소년(43.0%)에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성인 청년층(29.5%), 유아동(26.0%), 성인 장년층(16.6%), 60대(11.5%)임.

<연도별·대상별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 이에 개정안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18세 미만)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협의체(이하 “민·관 협의체”)를 신설하고, 대응센터의 업무 범위에 관련 업무를 추가함으로써 아동 대상 과의존 대응체계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 민·관 협의체가 구성될 경우 정부 정책과 민간의 전문성 및 현장 경험을 연계하여 과의존 예방·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발굴·추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리고, 개정안은 민·관 협의체에 포함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예시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명시하고 있는데 정신건강 업무 및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 업무의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인 점, 소속기관인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문제는 특정 연령층에 한정되지 않고 아동, 청소년, 성인 및 고령층 등 전 연령층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이며, 현행법에 따른 과의존 예방·해소 정책 또한 일부 연령대나 집단을 특정하지는 않고 있음.
- 또한, 앞서 언급한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이 청소년 집단에서 가장 높으므로 청소년 집단에 대한 대응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보이나,

성인 청년층 집단이 그 다음으로 높으며 비율 또한 유아동, 청소년 집단과 마찬가지로 매년 증가한다는 점에서 성인에 대한 과의존 예방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과의존 대응체계 내에서 아동만을 대상으로 특정하여 민·관 협의체를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둘째, 현재 대응센터는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주로 상담이나 홍보와 같은 현장 중심의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하

고 있어, 안 제52조제2항제4호에 따라 민·관 협의체 업무 지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대응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특히, 현행법 시행령 별표 4에서 규정하는 ‘대응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살펴보면, 종사자 요건으로 대응센터의 장 외에는 상담 실무 업무 직원만을 요구하고 있어 대응센터가 주로 상담·예방 등 실무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별표 4]>

대응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제49조제1항 관련)	
4. 종사자 수 및 자격 등	
가. 대응센터는 관리 업무 담당 직원 1명, 상담 실무 업무 담당 직원 2명 이상의 직원을 각각 배치해야 한다. 이 경우 상담 실무 업무 담당 직원 중 1명은 방문객 안내 및 전화상담 대응 업무를 해야 한다.	
나. 대응센터의 장과 상담 실무 업무 담당 직원은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구 분	자격기준
대응센터의 장	다음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하여 고용한다. 1)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의 상담 관련 실무 경력(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이상의 관련 분야를 졸업(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한 사람으로서 7년 이상의 상담 관련 실무 경력(졸업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상담 실무 업무 직원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하여 고용한다. 1)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이상의 관련 분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상담 관련 실무 경력(졸업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상담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

- 한편, 개정안과 같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게 된다면 대응센터보다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해소 등 지능정보사회 역기능 해소를 위한 지원 및 연구’³⁾를 담당하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민·관 협의체의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 성격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어 보임.

다. 정부 및 관련 단체 의견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중검토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문제는 아동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므로 신설되는 민·관 협의체의 대상이 청년, 고령층 등 전 연령대를 포괄할 수 있도록 안 제51조의2에서 ‘아동’ 표현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개정안의 대응센터 업무 추가와 관련하여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상 대응센터는 이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교육·홍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신설되는 ‘아동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업무는 기존 규정과 중복될 소지⁴⁾가 있고, 대응센터는 전문상담사가 상주하며 현장 중심의 실무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민·관 협의체 운영 지원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대응센터의 기능 및 성격에 부합하지 않음.

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 ③ 지능정보사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6. 정보격차의 해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해소 등 지능정보사회 역기능 해소를 위한 지원 및 연구

4) 추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아동의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상담 기능은 정신건강복지센터, Wee센터 등 다른 상담기관에서도 수행하고 있어, 대응센터에 동일한 기능을 부여할 경우 기관 간 역할 중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2) 행정안전부: 신중검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별도 협의체를 설치하기보다는 성평등가족부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국무총리 소속 ‘아동정책조정 위원회’ 등 기존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230